

## 질의위원 : 최재천 위원

[문] 200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지위 확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적 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측의 재량권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판결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판결들을 두고 시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대표적인 판결들로 지적하고 있는 중임. 이와 같은 주변 여건과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과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대한 사법적극주의나 아래로부터의 변화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람.

- 
- 특정사건에 관한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원론적으로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사법권의 개입을 자제한 것으로 생각됨.